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 6. 27 선고 2022가단111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채규달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앤규

담당변호사 박규하

2. C

변 론 종 결 2023. 6. 13.

판 결 선 고 2023. 6. 27.

주 문

1. 피고 B와 D 사이에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58,982,968원의 한도 내에서,

나.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다.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21,568,994원의 한도 내에서각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80,551,9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B는 D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1. 4. 2. 접수 제56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9. 체결된 매매계약과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는 D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1. 4. 2. 접수 제56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83,069,0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C은 원고에게 34,053,06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신용보증서 발급 등

원고는 D과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위 각 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각 해당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증계약일	보증금액(원)	대출금액(원)	대출은행
1	2015. 6. 24.	9,350,000	11,000,000	E조합 상하지점
2	2016. 3. 11.	6,630,000	8,000,000	E조합 상하지점
3	2016. 4. 1.	68,000,000	68,000,000	F조합
4	2016. 5. 10.	63,000,000	70,000,000	G조합
5	2017. 4. 28.	12,750,000	15,000,000	G조합
6	2017. 9. 27.	42,500,000	50,000,000	G조합
7	2018. 6. 5.	6,300,000	7,800,000	E조합 상하지점
8	2019. 11. 12.	18,700,000	22,000,000	E조합 상하지점
9	2020. 5. 15.	31,500,000	35,000,000	G조합
10	2020. 11. 17.	9,520,000	11,200,000	E조합 상하지점

나. 원고의 대위변제

D은 2021. 9. 29.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D을 대위하여 2022. 3. 17.부터 2023. 3. 3.까지 합계 205,726,961원을 위 각 해당 은행에 변제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D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

1) D은 2021. 3.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대금 합계 73,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1. 4. 2. 접수 제5632호로 피고 B 앞으로 마쳐주었다.

2) D은 2021. 3. 2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과 전북 고창군 H 전 289㎡를 대금 합계 5,2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제3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1. 4. 2. 접수 제5631호로 피고 B 앞으로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3) D은 2021. 4. 2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을 대금 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1. 5. 10. 접수 제8023호로 피고 B 앞으로 마쳐주었다.

4) D은 2021. 4. 23.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대금 51,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21. 5. 3. 접수 제7798호로 피고 C 앞으로 마쳐주었다.

라. 별지 목록 제1, 2, 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1) D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2015. 6. 25. 설정된 근저당권자 I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72,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53,742,052원(= 원금 52,940,000원 + 이자 802,052원)을 2021. 4. 2.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D은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2020. 4. 29. 설정된 근저당권자 F조합, 채무자 D,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31,214,813원(= 원금 30,000,000원 + 이자 1,214,813원)을 2021. 5. 3. 변제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3) 한편,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는 1999. 8. 18. 설정된 근저당권자 J, 채무자 K, 채권최고액 7,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남아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4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조합, I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이러한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제1 내지 3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아래 2)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③ D은 위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21. 9. 29.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초과 여부

(1)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가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내지 3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와 D으로 동일한 점, ② 피고 B는 D의 여동생인 점, ③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체결일은 동일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후에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④ 이 사건 제1 내지 3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은 그 당시 D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내지 3매매계약은 하나의 사해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사해행위에 관한 D의 무자력 여부는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일인 2021. 3. 29.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4)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가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감정축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21. 3. 29. 당시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전북 고창군 H 전 289㎡, 경기 이천시 M 임야 33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시가 합계액은 231,504,920원인 사실, 그 당시 D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53,742,052원, ②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1,214,813원, ③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205,726,961원, ④ 변호사 N에 대한 수임료채무 7,700,000원, ⑤ O에 대한 농약대금채무 9,119,000원, ⑥ P에 대한 대여금채무 9,500,000원, ⑦ Q에 대한 대여금채무 5,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322,002,826원(= 53,742,052원 + 31,214,813원 + 205,726,961원 + 7,700,000원 + 9,119,000원 + 9,500,000원 + 5,000,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D은 이 사건 1 내지 3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418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1 내지 3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이 채무초과상태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1 내지 3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과 전북 고창군 H 전 289㎡의 시가 합계액이 164,324,920원이었는데, 이 사건 1 내지 3 매매계약의 대금 합계액은 93,250,000원(= 73,000,000원 + 5,250,000원 + 15,000,000원)에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제1 내지 3매매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인 D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염가에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피고 B가 D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D의 채권자들에게 변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3) 피고 B의 선의 항변

가) 피고 B의 주장 요지

피고 B는 D의 채무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적정한 가격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내지 3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단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다6046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B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 B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방법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2022. 8. 23. 기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가액은 합계 112,725,020원(= 11,891,000원 + 100,834,02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53,742,052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 112,725,020원에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53,742,052원을 공제한 58,982,968원(= 112,725,020원에 - 53,742,05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58,982,96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제2매매계약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제3매매계약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제3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3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 2022. 8. 23. 기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가액은 40,071,000원,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가액은 56,679,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위 각 부동산의 가액은 위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며,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당시 피담보채무액이 31,214,813원,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에는 설정된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7,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은 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 가액 40,071,000원에서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000원을 뺀 나머지

33,071,000원(= 40,071,000원 - 7,000,000원)에서,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1,214,813원을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별지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사건 선순위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7,000,000원을 뺀 금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11,502,006원[= 31,214,813원 × 33,071,000원 ÷ (33,071,000원 + 56,679,000원), 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21,568,994원(= 33,071,000원 - 11,502,006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21,568,9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 1) 그러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58,982,968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은 21,568,994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각 가액배상액 합계 80,551,962원(= 58,982,968원 + 21,568,99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또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그 원상회복으로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3)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제4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위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②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③ D은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5개월이 경과한 2021. 9. 29.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위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21. 4. 23. 당시 D은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전북 고창군 H 전 289㎡, 경기 이천시 M 임야 330㎡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시가 합계액은 109,766,000원(= 37,962,000원 + 53,980,000원 + 4,624,000원 + 13,200,000원)인 사실, 그 당시 D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1,214,813원, ②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205,726,961원, ③ 변호사 N에 대한 수임료채무 7,700,000원, ④ Q에 대한 대여금채무 5,000,000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소극재산의 합계액이 249,641,774원(= 31,214,813원 + 205,726,961원 + 7,700,000원 + 5,000,000원)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D은 이 사건 4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2) 따라서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D으로서는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4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피고 C의 선의 항변

1) 피고 C의 주장 요지

피고 C은 D의 채무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농사를 짓기 위한 목적으로 적정한 가격으로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선의의 수익자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아울러 을나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C은 이 사건 제4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D과 부동산 거래 또는 금전 거래를 한 적은 없는 점, ② 피고 C과 D은 가까운 친인척 관계는 아닌 점, ③ 피고 C은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의 대금 51,000,000원을 모두 D에게 실제로 지급한 점, ④ 이 사건 제4매매계약 체결 당시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53,980,000원으로서 위 매매대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점, ⑤ 피고 C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서 42,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바,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위험을 인식하였다면 피고 C이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이 사건 제4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4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의 악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위한 가액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함철환

별지

부 동 산 목 록

1. 전북 고창군 대 517㎡2. 전북 고창군 동[도로명주소] 전라북도 고창군

벽돌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99.54㎡

3. 전북 고창군 임야 362㎡4. 전북 고창군 임야 592㎡5. 전북 고창군 임야 33㎡6. 전북 고창군 임야 34㎡7. 전북 고창군 임야 19㎡8. 전북 고창군 전 2109㎡- 이상 피고 관련 -9. 전북 고창군 답 2699㎡- 이상 피고 관련 -

